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평창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3조)
- 2)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5조)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 4) 청년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13조)
- 5)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제15조)
- 6)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23조)
- 7)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촉진, 창업지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년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게 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용과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청년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은 39세 이하로 규정하여

우리 군과 차이가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는 청년 사무는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평창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1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

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추진체계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청년·주택·복지·문화·교육 등 청년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상으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자율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정책 사업

제15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평창

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물적·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다.

제25조(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평창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남녀를 말한다.
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